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하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하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정보의 생산·분석·제공 등 국가의 지하수 정보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지하수자원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제고하며, 수량·수질 통합에 따른 측정망 일원화를 통해 정부의 지하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지하수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가 지하수법에 마련됨에 따라 센터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제출·승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토지굴착 행위 사전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이행보증금 중복 부과

가능성 해소(안 제22조제2항)

신고 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굴착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굴착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신고자 등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의 중복부과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 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서약서 및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같음토록 규정하여 이행보증금의 중복 부과 가능성에 대해 해소코자 함

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5)

유출지하수를 지하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유출지하수를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상지역 확대(안 제14조의5)

지하수법 제9조의2에 의한 유출지하수 발생지역, 같은 법 제9조의8에 의한 물 공급 취약지역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설치·관리 대행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수를 지하수자원으로써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마. 지하수 측정시설 일원화(안 제7조, 제27조)

지하수 관련 기존의 국가관측망(수량)과 지하수수질측정망(수질)이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 측정망의 중·장기 계획을 규정하고 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국가측정망 운영 효율성 제고

바.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면제 또는 감경범위 규정(안 제 40조의3제3항)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면제 또는 감경범위에 대해 중복 부과, 공공목적, 지하수 장애, 이용량 등 지역의 지하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출지하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출지하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제2조제2항제2호·제3호”를 “제2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발행하여야”를 “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측 및 조사”를 “측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의2 및 제6

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조사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 등 형태·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4(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의 장은 법 제5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하수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하수센터 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지하수”를 “지하수”로, “사항”은”을 “사항”이란”으로, “사항으로 한다”를 “사항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측망”을 “측정망 중·장기”로 한다.

제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으로, “경우로 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변경”을 “변경”으로, “경우로 한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각각 “법 제9조제3항”으로, 같은 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3항”을 “법 제9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법 제9조의5제3항”을 “법 제9조의5제4항”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의5제3항”을 “법 제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5제4항”을 “법 제9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지역
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5조의2의 제목 “(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를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되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위변동”을 “수위변동 및 수질오염”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으로, “(預置)하여야”를 “(預置)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및 제7항 중 “반환하여야”를 각각 “반환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서약서 제출 및 추가항목(영 제13조제2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따른 상부보호공 제거, 수중모터 제거 등)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가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를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관측망을”을 “국가측정망(이하 이 항에서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로, “특성”을 “특성, 수질 특성”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를 “기본계획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국가측정망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실태를 측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를 “수위측정망을 설치하여”로,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를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로, “수위관측망을 이용”을 “수위측정망을 이용”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조관측망을”을 “보조측정망(이하 이항에서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로,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를 “설치해야 하며, 보조측정망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실태를 측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위 측정”을 “변동실태조사”로, “수위실태”를 “변동실태”로,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를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에 관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수질 특성, 개발 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 요청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승계받은”을 “승계받으려는”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3.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4.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제4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43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44조 중 “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부터 제4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경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1)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 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2)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 경신고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2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 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	법 제40조의2제1호	10	20	30

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200	300	400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50	100	150
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8호	50	100	200
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4호	500	500	500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5호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200	300	400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2호	10	20	30
러.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법 제40조제10호	50	100	200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며.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7호	200	300	400
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1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2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3호	30	50	70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4호	30	50	7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u>특성</u> 및 <u>개발 가능량</u>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u>하여야</u>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 ----- ----- ----- ----- ----- <u>특성</u> , <u>개발 가능량</u> , <u>수질특성</u> 및 <u>지하수개발·이용시설</u> , <u>유출지하수</u> ----- <u>해야</u>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u>작성하여야</u>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 ----- ----- ----- ----- <u>작성해야</u>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u>특성</u> 및 <u>개발 가능량</u>	③ ----- ----- ----- ----- <u>특성</u> , <u>개발 가능량</u> , <u>수</u>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
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
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
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
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에 관한 조사

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
설, 유출지하수 ----- 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 통보해야 ---
-----.

1. 협의해야 ----- 제2조제
2항제2호·제3호·제4호 ---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② · ③ (생략)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에 따
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
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
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법 제17조제6항이 법 제5조제9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제2항을
영(안) 제6조의2제1항, 제2항으로 이동

2. 통보해야 -----
----- 않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

----- 법 제5조제9항-----

----- 발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조사 및 결과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
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
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
이·지름 등 형태·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

	<u>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u> <u>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u> <u>5.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u> <u>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u>
<u>제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생략) 2. 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u>관측 및 조사</u> 자료 3.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u>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u> ----- ----- ----- <u>포함되어야</u> -----. 1. (현행과 같음) 2. ----- <u>측정·조사</u>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조사·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해야 -----
--.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4(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하수센터의 장은 법 제5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하수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하수센터 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고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해야 ----.

④ -----

----- 해야 -----.

⑤ -----

----- 포함돼야 ----.

1. ~ 3. (현행과 같음)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 6. (생략)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 · 운영계획

2. ~ 4. (생략)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지하수개발 · 이용의 신고)

① ~ ⑤ (생략)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⑥ -----지하수-----사항”이란 ----- 사항을 말한다.

1. ----- 측정망 중 · 장기 -----

2. ~ 4. (현행과 같음)

⑧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9항-----

2. 제6항제3호-----

제13조(지하수개발 · 이용의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삭 제

2. · 3. (생 략)

⑦ · ⑧ (생 략)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 · 방법 · 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 변경----- 경우를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 법 제8조제4항

----- 통보해야 -----.

② -----

-----.

--- 신청해야 -----.

③ -----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신고) ① 삭 제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 통보해야 -----.

제14조(준공신고)

② -----

----- 신고해야 -----.

③ -----

----- 발급해야 -----.

④ 법 제9조제3항-----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9조제3항-----

----- 통지
해야 -----.

⑥ -----

----- 신청
해야 -----.

⑦ -----

----- 통보해야 -----.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의4제4항-----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9조의5제4항-----
----- 않거-----

----- 통지해

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 4. (생략)

⑤ (생략)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또는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야 ----.

③ 법 제9조의5제4항-----

--.

④ 법 제9조의5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

1. 법 제9조의2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지역

<신 설>

<신 설>

※ 기존 제1호에서 제3호로 이동

2. (생 략)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2. (생 략)

<신 설>

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 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지하수 수위변동에 대한 원인분석

4. (생 략)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대통령령-----
-----.

1. 2. (현행과 같음)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 조사) -----

----- 포함돼야 -----.

1. 2. (현행과 같음)

3. ---- 수위변동 및 수질오염-----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
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
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생략)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

-----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하 “이행보증
금”이라 한다)-----

-----(預置)해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서
약서 제출 및 추가항목(영 제13
조제2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
설의 표준도에 따른 상부보호공
제거, 수중모터 제거 등)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면 법 제14조제1
항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가 기 납부
한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7조제1
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납
부해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갈음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
·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
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
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
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
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
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
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
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
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

제4항

⑥

반환해야

⑦

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생략)

② (생략)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 반환해야
-----.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측정망-----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

있다.

1. ~ 5. (생 략)

6.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② (생 략)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측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
----- 국가측정망(이하 이 항에서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 특성, 수질특성 -----
기본계획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국가측정망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실태를 측정해야 ----.
----- 수위측정망을 설치하여 -----
-----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 수위측정망을 이용-----.

② -----
----- 보조측정망(이하 이 항에서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 설치해야 하며, 보조측정망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

측정하여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수위상태를 종합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영 제28조제3항에서 영(안) 제27조제5항으로 이동

동실태를 측정해야 -----
-----.

③ -----
----- 변동실태조사 -----
----- 변동실태 -----
-----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
-----.

<삭 제>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에 관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수질 특성, 개발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년 관
할구역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
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
이·지름 등 형태·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
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
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야 한다.

수보전구역으로 지정 요청

<삭 제>

※ 영 제28조제1항, 제2항→영 제6조의2
제1항, 제2항으로 이동

※ 영 제28조제3항→영 제27조제5호

③ 법 제1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 제출해야 -----
--.

② -----

----- 각 호에 따른 ----- 심사해

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3.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야 ----.

③ 법 제24조제2항-----
----- 승계받으
려는 -----

--- 신고해야 -----.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
--.

1. 법 제8조제4항-----

2. 3. (현행과 같음)

② -----

보고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삭제

<신설>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신설>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3.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4.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8조제1항</u> 에 따른 수질 오염실태의 측정	3. <u>법 제17조제1항</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u> <u>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u> <u>수에 관한 사무</u>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u>39조 및 제40조</u> 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u> <u>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1 - 6241